

ver.20240121

정강·정책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개혁신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생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토론의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넘어 어엿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주제를 다룰 것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발성 위기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 경제성장이 정체기에 머무르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어느 주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분배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 사회의 집단적인 목표가 우선시 되었던 것과 달리 어느 경우에도 시민의 인권과 자유의지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의 미래, 자녀의 미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와 위기라는 상황 인식을 토대로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위해, 늘 미래와 희망에 집중한다. 개혁 보수 세력으로서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선도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과 함께 미래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한다. 걸어가고 뛰어가 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길만 있을 뿐이다. 잠시 우리가 멈추고 정체될 경우, 우리는 안과 밖으로부터 엄청난 도전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1987년 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려 한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대적 중차대한 문제들을 정기하게 토론하고 다루고자 한다. 변화의 공간은 무한대다.

우리는 사회적 보수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 모두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한다. 정치적 극한 대립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비상상태에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는 점에 주목한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쳐 놓고 극한 정치적 대립과 편향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언어와 이념, 행동들을 반대한다. 개혁 신당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다.

우리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 민주화를 소명으로 생각한다.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엄중한 노동시간을 보낸 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상을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안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국력과 국격,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생각하는 국가 외교는 국가 생명력이 다 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안보는 영토를 적대 세력에게서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협정의 안보를 넘어서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사회 안보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은 사람이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는 시민들이 이루어 낸 역사적 결과다.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시대적 과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슬기롭게 극복해 낸 원동력은 평범하지만 법과 상식을 지키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었다. 법과 상식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은 우리들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된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아니다. 보수는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세력이다. 좋았던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험난한 과정을 중시한다. 새로운 도전과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대한 변화에 맞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협력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찾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 모두를 그 길로 이끌려는 세력이다.

우리는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신당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창당과 동시에 모든 시민과 함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 회귀적 정치제도와 정당구조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정당과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개혁신당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분명하게 하고, 철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향으로 시민을 이끌려 한다. 미래의 정치에 모든 시민을 초대하고자 한다.

<기본정책>

하나.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조만간 대량 실직이 닥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량 실직에 따른 소비절벽과 시장소멸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든다. 이와 관련, 시장유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지방소멸은 전국 모든 지역이 겪는 현상이다.

셋.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특수목적 중학교로 예술중학교와 국제중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로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학교를 확대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중학생 시절부터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의 지방 생활에 대한 저항감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넷.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지방주택 보유요건 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에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 저가주택의 가액을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향후 이중 주민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소외지역 분원 설치도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료 소외지역은 2, 3차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도 함께 도입해 분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도 의무화하고자 한다.

여섯.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시 불이익 해소 그리고 시민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참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 개세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 면세근로자 비율은 33.6%에 달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법제화를 주저해왔다. 우리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

일곱. 시민의 자녀교육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행평가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자 한다. 수행평가 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암기과목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아울러 부모의 수행평가 개입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온 가족 수행평가가 된 지도 오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즉각적인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덟.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방송심의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위원장이 친인척까지 동원해 민원을 청구하도록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홉. 시민의 확장이익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긴 했지만, 노동기본권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현실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 제기를 위법으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시민의 이익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다수가 시민이기도 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정책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열. 시민 확장이익 보장의 또 다른 방안으로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추진하고자 한다. 영부인의 국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뤄지는 속에도 관리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영부인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공식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식적 감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믿는다. 더 이상 좌절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제안한다. 천천히 한발씩 물러섬 없이 나아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참여해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ver.20240121

당헌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개혁신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개혁신당은 시민의 삶에 주목한다. 특히, 그들이 당면한 문제와 위기감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단 헌법이 보장한 기초이익과 기초행복 그리고 기초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 확장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한국의 모범시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길 시대를 열 것이다. 우리는 창당과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려 한다.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 접근법 곧 국정철학으로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고자 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각종 부작용 곧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이 아닌 모범시민의 자율적 동참으로 극복하는 방안이다.

제3조(구성)

①중앙당, 시·도당을 둔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요건)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으뜸당원)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제안 등 당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은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당론과 당명을 준수할 의무
3. 당무수행 관련 기밀 유지 의무
4.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당비 납부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의무

③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당원소환제)

- ①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②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내 경선, 공천, 징계 등 주요 당무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당 소속 시·도지사와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④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11조(상벌)

-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 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구성)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 소속 국회의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9. 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무위원회 위원
16.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7.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8.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19. 국회보좌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②제1항 제17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시까지로 한다.

③전당대회 대의원 결원 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

①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당규의 채택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당무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당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으뜸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주재)

- ①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의장이 주재한다.
- ②전당대회 의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전당대회의장이 주재하기 어려울 때는 전당대회 의장이 지명한 전당대회 부의장이 담당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 ①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위원회

제18조(구성) 전당대회의 수임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
6. 당 소속 시·도지사
7. 각종 위원회 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0. 시·도의회 의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2.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장
15. 자문위원회 임원
16. 재정위원회 임원
17. 시·도당대회 선출 당무위원

제19조(기능)

- ①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권위 시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당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의사) ①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소집은 당 대표가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당무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의장이 주재한다.

④당무위원회 의장은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당무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당무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제21조(지위와 권한)

①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2. 주요 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

3.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③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당직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⑤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당 대표의 선출)

①당 대표는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후보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 순위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당 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23조(선출직 최고위원)

①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5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②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 최고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당무위원 선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타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임기)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자문기관과 보좌기관)

①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와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다.

④당 대표의 자문기관과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의

제30조(구성)

①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정책위의장

4. 선출직 최고위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31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소집 요구

2.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명

4. 선거관리위원장 등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
5. 각종 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의결
6. 당의 예산과 결산
7. 당무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
8.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소집과 의사)

- ①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당 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6절 당무집행기구

제34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35조(당무집행기구)

- ①중앙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②사무총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6조(임명)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37조(당직자 인사위원회)

- ①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사무처 당직자는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 ③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임면 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정책위원회

제38조(구성)

- ①당 정책을 입안·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한다.
- ③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정책의 연구와 심의

2.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와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 심의
6.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제8절 윤리위원회

제40조(구성)

- ①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 ③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윤리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경우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 ⑤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와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와 심의·의결
5.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당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8절 당무감사위원회

제42조(구성)

- ①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 ③당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⑤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기능) 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광역과 기초 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와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그리고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7.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9절 상설위원회

제44조(상설위원회)

①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정책위원회
2. 법률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인재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특별위원회 등

제45조(특별위원회 등)

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절 중앙연수원

제46조(중앙연수원)

①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두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중앙연수원에 중앙연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절 정책연구소

제47조(정책연구소)

①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절 시·도당

제48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7. 당 소속 시·도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8. 시·도당 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9. 직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10.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와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 운영방식을 준용해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시·도당대회의 기능)

①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당무위원 선출
3. 시·도당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출
4. 공직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승인

②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위원회를 둔다.

③시·도당대회와 시·도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준용해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시·도당위원장 등)

①시·도당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그리고 위원들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위원회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시·도당의 당원이 1000명 이하로 하락하거나 당원 활동이 저조한 경우 전당대회 의결로 시·도당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당원협의회)

①시·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당원협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당원협의회는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4절 의원총회

제52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53조(의원의 의무와 지위)

- ①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기능)

- ①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과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②국회의장·부의장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주재)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56조(소집 및 회의)

- ①의원총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③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원내대표는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의결정족수)

-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 직접, 비밀 투표 또는 전자서명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재적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 ⑤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58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 ①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 ②제57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제15절 원내대표

제59조(지위)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60조(선출과 임기)

-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1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2조(원내부대표 등)

-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63조(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공천관리위원회)

- ①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와 시·도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또는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⑤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시·도당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 또는 시·도당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결권을 가진다.
- ⑥제5항의 최고위원회의 또는 시·도당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 2. 당 소속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3. 우선 추천지역 선정
- ⑧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공직 후보자 추천)

- ①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국민경선
 - 2. 단수 후보자 추천
 -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 ②국민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제66조(우선추천제도)

- ①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책임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 2. 반복적인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③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 ①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
- ③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당헌 개정

제68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69조(의결 절차)

- ①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당무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당무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개정 당헌의 공포) 당무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당 대표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71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72조 (예산결산위원회)

- ①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전략기획부총장, 재정위원장, 총무국장, 공인회계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 ③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와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7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원 투표 또는 전당대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 ③합당과 해산 그리고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 ①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1월 20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창당대회 임시의장 선출) 창당대회 임시의장은 창당대회 전 창당준비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거쳐 창당준비위원장 중 1인으로 추대한다.

제3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선출 및 최고위원 등 지명에 관한 특례)

- ①창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초대 당대표는 1인으로 하고, 창당대회 임시의장의 추천을 거쳐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 대표는 최초의 최고위원회의의 최고위원(3인 이내),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을 지명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 대표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합당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